

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589호

의 안 명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

의 결 일 2021. 9. 27.

주 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폐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에 따라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 인천교육청, 광주교육청,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울산교육청, 경기교육청, 강원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 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별 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

2021. 9.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제도현황	2
III. 문제점	5
1. 채용 사전협의 불명확성·형식성	5
2. 채용원칙을 무시한 채용절차	6
3.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관리·감독 미흡	8
IV. 개선방안	9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사전협의 강화	9
2. 채용절차의 실효성 제고	9
3.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관리·감독 강화	11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2

I. 추진배경

〈 대통령 말씀 〉

- 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불공정,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며 일상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힘을 포용적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20.12.1. 국제반부패회의)

- 정부는 사립학교의 교수학습활동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조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 사립학교 지원금 : ('17.) 8조9,009억 → ('18.) 9조3,181억 → ('19.) 10조4,122억

- 사립학교 보조금의 약 55%가 교직원 인건비이나 인사·채용비리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학 관련 부패 문제 발생

< 1년간('19.6.10~'20.6.30.)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유형별 접수현황 > (단위 : 건)

합 계	인사·채용	교비·법인 회계	입학·학사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
296	108	58	25	18	87

- 이에 권익위 실태조사 및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관련된 불공정 및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

- 사립학교 교원 채용방식은 「사립학교법」에서 공개전형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원 채용방식은 제각각

※ 학교 정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방식이 결정되며, 이로 인해 사립학교마다 사무직원 채용방식이 상이

-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제한 사유가 불명확하여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사립학교 지원금 관리·감독 소홀 등 초래

※ 다수 교육청이 인사운영지침 준수와 인건비 지원을 연계하고 있으나 교육청마다 상이하고,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학의 불만 및 소송 등 발생

- 이에 따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민원분석(5~6월), 제도개선안 마련(7월), 기관협의(7~8월)

II. 제도현황

1.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에 관하여 학교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 사립학교 교육 진흥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교육청별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이하 '사립학교 인사운영 지침', 교육청에 따라 지침명 다소 상이)

- 사립학교 인건비 등 지원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관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승진, 교육훈련 등 운영기준 제시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

- 다수 교육청에서 공·사립학교간 형평성 등을 위해 임용결격사유, 승진, 퇴직, 호봉 등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보수 규정 등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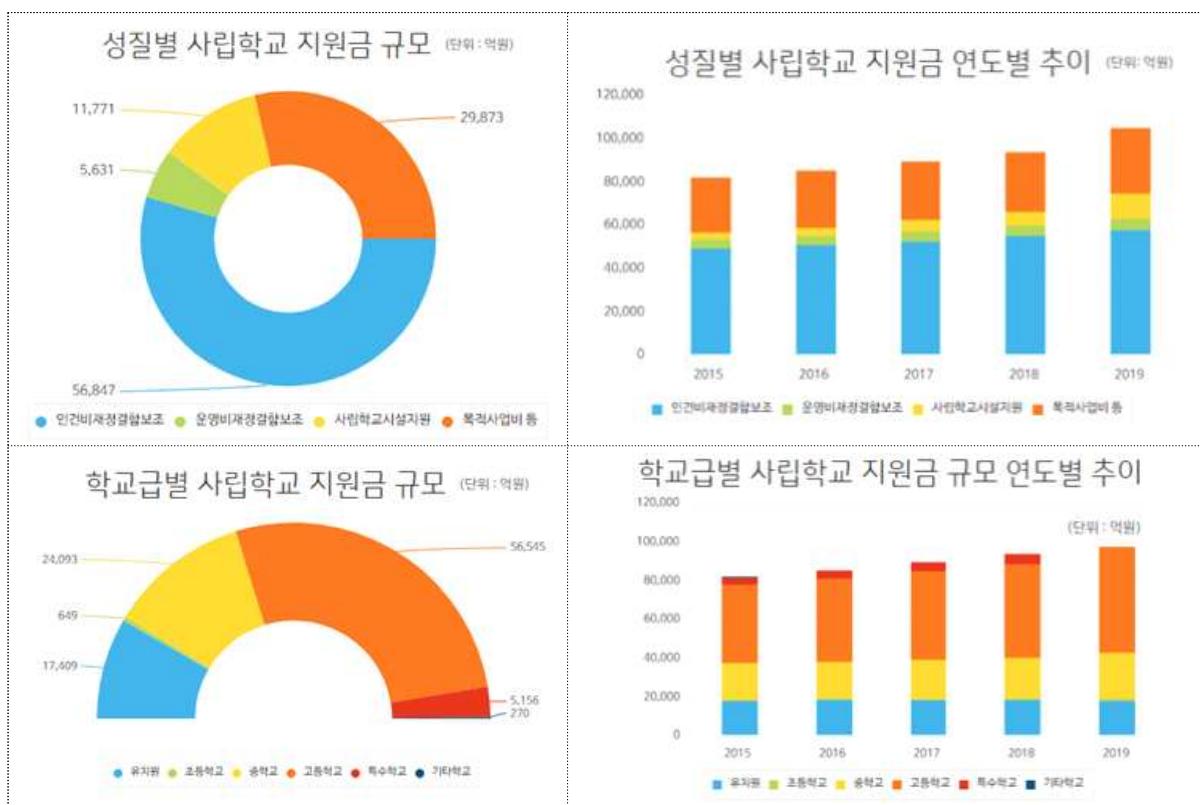
○ 그 외 교육청별 '사립학교 보조 또는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 등

-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 지원 대상사업,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방법, 집행 시 유의사항 등 안내

※ 예) 서울시교육청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매월 25일 교부

② 사립학교 지원금 현황

- (종류) 인건비 재정결합보조금*, 운영비 재정결합보조금, 사립학교 시설지원금, 목적사업비 등
 - *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조금
- (규모) '19년 총 10조 4,12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인건비* 재정결합보조금이 54.6%(5조 6,847억 원)로 절반 이상
 - * 각 교육청에서 결정하나, 일반적으로 국·공립 교원 및 사무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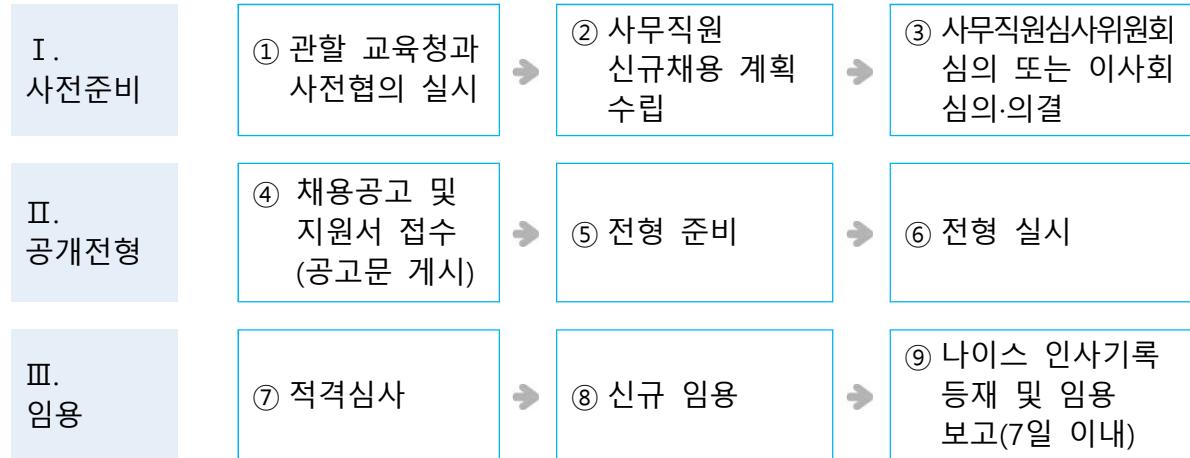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③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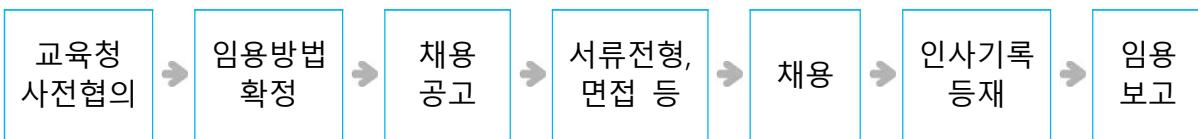
- 사무직원 재정결합보조금(인건비)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학교 정관 등에 따라 학교 자체 채용
- 재정결합보조금(인건비)을 지원받는 경우, 학교 정관 이외에 교육청 '사립학교 인사운영 지침' 등에 따르며 교육청마다 상이
 - ※ 별첨) 교육청별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기준 비교표

- ◇ (경기교육청 등) '사립학교 인사업무 처리지침'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을 지원받는 사무직원 신규채용시 필요한 채용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예)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절차도>



< (예) 서울, 경남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절차도>



- ◇ (그 외) 일부 교육청은 '교육청 사전협의' 외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을 지원받는 사무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원칙이나 절차를 정하지 않음

④ 전국 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 사무직원 현황

(단위 : 명, 2020년 기준)

구분	정원	현원
서울	1,583	1,560
부산	566	563
대구	448	446
인천	224	223
광주	352	350
대전	211	209

구분	정원	현원
세종	4	4
울산	95	81
경기	1,267	1,205
강원	163	163
충북	199	197
충남	287	285

구분	정원	현원
전북	565	553
전남	404	353
경북	770	709
경남	635	611
제주	98	98
합계	7,871	7,610

(출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III. 문제점

1 채용 사전협의 불명확성·형식성

□ 비공개경쟁으로 신규채용 가능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원은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에서 채용방식 결정
 - 수시로 변경 가능한 교육청 지침으로 공개채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깜깜이 채용'을 뚝인하는 결과 초래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시 공개경쟁채용을 의무화하지 않아, 최소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친인척 또는 지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학비리 내부 공모 가능성을 높임(20.12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 다만,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21.7.26.)으로 사무직원 공개채용이 법률에 명시 되었고, '22.1.26.부터 시행 예정

□ 교육청 사전협의 형식적 운영

-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무직원 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를 하나 일부 지역은 사전협의 없이 학교 재량으로 채용 가능**
 - * 다수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초과 및 직급상치 예방 등을 위해 인건비 지원 사무직원 신규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 ** (○○교육청) 최하위 직급(9급) 채용시에는 사전협의 불필요하고, 행정실장 신규채용시에만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고 임의사항으로 규정
- 교육청 사전협의 원칙이 요식행위로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소지
 - 사전협의 기한을 정하지 않아 채용 직전 형식적으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도 의무 이행으로 간주
 - 서면 등 사전협의 방식이 없거나 구두협의도 인정해, 사후 관리·감독시 사전협의 여부 확인 곤란
- * ○○교육청 담당자 확인결과, 유선으로 협의해도 사전협의로 인정된다고 답변

2 채용원칙을 무시한 채용절차

□ 비공개경쟁이나 다름없는 채용공고 방식

- 공정한 공개경쟁이 되려면 누구든지 손쉽게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나, 사실상 비공개경쟁을 용인
- 채용공고 방식을 정하지 않아 공고를 하지 않거나, 외부를 제외하고 학교 내 공고만 해도 무방

< 교육청별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공고 방식 >

채용공고문 서식 /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전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게시	전북
채용공고문 서식 /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경기, 서울 등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등 4곳 이상 게시	경북
채용공고 방식 없음	충남, 충북 등

- 외부에 채용공고를 했으나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민원 유발 등

■ 학교법인게시판은 법인소속의 교직원들도 존재事實을 잘 모를 정도로 가시성이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내정자 유무는 밝혀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채용공고를 편협하게 게시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19.8월, ○○교육청 민원)

- 교육청에 따라 채용공고 기간이 없거나 상이하여 취업준비생이 공고를 접하기 어려울 가능성
- ※ 이와 달리,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공고방법과 공고기간(지원마감일 30일 전)을 정하고 있음

< 교육청별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공고 기간 >

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소 20일 전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서울, 울산
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소 14일 전	전북
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소 10일 전	경남, 광주, 제주
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	전남
채용공고 기간 없음	대구, 대전, 세종, 울산, 충남, 충북

□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부족

- 학교 사정에 따라 시험·서류·면접 등을 실시하도록 할뿐, 그 외 특수관계인 심사 배제 등 실질적인 공정성 부족
 - 인사위원 또는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하더라도 제한 없음 (경기교육청 제외*)
 - * 경기교육청은 채용담당자·인사위원·이사(장)의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신규채용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침에 명시
 - 법인 설립자, 이사(장)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손쉽게 채용할 수 있어 불공정 채용에 대한 우려 야기
 - ※ '19.6월~'20.6월까지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 296건 중 교직원 인사·채용 관련 신고가 108건(36.5%)으로 가장 많음
 -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로,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 박찬대 의원실 자료)

- 일부 교육청은 사무직원 채용심사에 외부위원 참여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
 - 불투명한 채용절차는 내정자 임용이나 채용청탁 의심 민원 유발
 - ○○고등학교에 사무직원 채용 공고가 나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 대상자는 저 포함하여 2명이었습니다. 면접 당일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제 앞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 불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어제 면접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떠 있더군요. ('19.2월, ○○교육청 민원)
 - 행정실 직원 □□□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 '600만원'의 부정청탁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어 신고합니다. 행정실 직원 대부분이 청탁금을 내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실까지 있다고 하니 조사를 요청합니다. ('19.5월, ○○교육청 민원)

3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관리·감독 미흡

□ 교육청마다 상이한 인건비 지원 기준

- 교육청 사전협의 등 채용원칙 위반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 여부가 교육청마다 다름

< 교육청별 인건비 미지급 기준 >

구 분	해당 교육청
교육청 사전협의 없이 임용한 직원 인건비 미지급	강원, 경기, 광주, 부산, 대구,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충북, 경북
사전협의 없이 임용시 인건비 지원 중단 가능	제주
사전협의와 다르게 임용한 직원 인건비 미지급	경북
사전협의와 다르게 임용시, 최하위 직급 인건비 지급	경남
임용원칙 위반시 해당 직원 인건비 미지급	경기,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임용원칙 위반시 해당 직원 인건비 미지급 가능	경남
인건비 미지급 규정 없음	대전, 충남

- 이는 교육청 재량행위인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사학의 자율성 침해로 보이도록 방조하는 등 혼란 초래

- 법령에 없는 사전협의 의무가 부과되자 사립학교들은 “사학의 교사 선발 권한이 침해됐다”며 반발했다. ('21.1월, 조선일보)
- ○○학원이 교육청 사전협의없이 교사 신규채용 후 보조금을 신청하자, 경기도 교육청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미지급함. 이에 ○○학원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이 1심 승소하였고, 현재 ○○학원에서 항소한 상황

□ 유령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조금 횡령

-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이 지급되는 사례 발생

- ○○학교 행정실장은 A씨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19.3월부터 '19.9월까지 교육청에서 받은 인건비 지원금 2,6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 ('20.9월, 권익위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신고사건 접수·처리 결과)
- 모 사립고등학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해 ○○교육청에서 급여 탈루 의혹 ('21.7.7. 뉴시스)

IV. 개선방안

1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사전협의 강화

□ 교육청 사전협의 방식 구체화

- 사전협의 기한, 서면 등 사전협의 방식, 교육청에 제출할 자료 (채용사유, 사무직원 정·현원표, 학급현황 등) 또는 서식 등 마련
※ 제출자료의 종류(경기교육청)나 사전협의 서식(서울교육청 등) 있는 사례 참고
-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무직원 채용임에도 교육청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지 않은 교육청은 사전협의 의무화 조치 병행
 교육청별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개정 (인천 등 해당교육청)

2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 실효성 제고

□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적정기간을 두고 채용공고

- 채용공고 방식을 정하지 않은 교육청은 최소한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및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 게시
 - 이와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시 '공지사항' 등 누구든지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하도록 안내
 - 이미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 교육청은 타 교육청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추가 방식 검토
- * (경북교육청)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4곳 이상에 게시토록 함
(전북교육청)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전북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
- 누구나 전형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일의 20일 전으로 모든 교육청 소재 사립학교의 채용공고 기간 통일

※ 참고)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공고기간을 지원마감일 30일 전으로 정하고 있음

☞ 교육청별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개정 (해당교육청)

< (예시)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중 사무직원 채용공고(안) >

현재	개선(안)
교육청마다 상이	구체적인 채용일정 및 절차가 포함된 공고문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4곳 이상에 게시 * 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공지사항' 등 누구든지 찾기 쉬운 곳에 게시

□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

- 채용담당자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자로서의 선임을 지양하고 그 지원을 인지한 경우 업무에서 배제
- 인사위원 또는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지원이 예상되거나 인지된 경우, 관련 심의 참여 배제
- 이들의 채용업무 배제를 위해 채용지원자가 학교 내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근무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채용지원 서식 마련
- 채용담당자(전형담당자, 심사위원 등)의 윤리·보안 확인·서약서를 의무화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한 도덕적·법률적 책임 부과

☞ 교육청별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개정 (해당교육청)

< (예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

- ▶ 채용담당자(행정 및 전형위원 등)에게 윤리·보안 확인·서약서를 징구하고, 전형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의 신상은 대외적으로 미공개한다.
- ▶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용담당자로서의 선임을 지양하고, 그 지원을 인지한 경우 업무에서 배제한다.
- ▶ 인사위원 또는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인지하는 경우, 해당 신규채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채용시험에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비율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학교와 독립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청별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개정 (해당교육청)

< (예시)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안) >

현 재	개 선 (안)
교육청마다 상이 (채용시험 시 외부 심사위원 참여에 관한 사항이 없거나, 외부위원 참여를 권장하는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전형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하며, 그 중 1/3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학교는 시험 실시 2주 전까지 교육청 담당부서에 외부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추천 위원을 통보하고, 참석 후 위원 수당을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3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관리·감독 강화

□ 인건비 미지급 사유 명확히 규정

-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미준수시, 인건비를 미지급함을 분명히 명시하여, 예산 지원의 공정성 제고
- 공개경쟁, 교육청 사전협의, 채용공고 기준, 이해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미지급 명시
- 이에 앞서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도 정하지 않은 교육청은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등에 이를 구체화하는 조치 필요

☞ 교육청별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개정 (해당교육청)

< (예시)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안) >

현 재	개 선 (안)
교육청마다 인건비 미지원 사유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경쟁, 최하위 직급 채용, 교육청 사전협의 등 임용원칙 위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다.▶ 채용공고 기준, 이해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의무 등 채용절차 위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다.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소관기관 : 17개 교육청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①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사전협의 원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사전협의 기한, 서면 등 협의방식, 교육청 제출자료 서식 등 마련◦ 교육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지 않은 교육청은 사전협의 의무화 조치 병행 <p>☞ 교육청별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개정</p>	해당 교육청
②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한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및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 게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등 찾기 쉬운 곳에 배치◦ 응시원서 접수일의 20일 전으로 모든 교육청 소재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공고 기간 통일 <p>☞ 교육청별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개정</p>	해당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담당자(전형담당자, 심사위원 등), 인사위원 또는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 의무 명시◦ 채용지원자가 학교 내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근무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채용지원 서식 마련 <p>☞ 교육청별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개정</p>	해당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비율을 의무화 <p>☞ 교육청별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개정</p>	해당 교육청
③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미준수시, 인건비를 미지급함을 분명히 명시 <p>☞ 교육청별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 개정</p>	해당 교육청

□ 조치기한 : 2022. 2월

정본입니다.

2021. 9. 29.

국민권익위원회

